



Create your dream and lead it yourself at BGH!

부 평 여 고 가 정 통 신 문

(우) 2137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43번길 44 전화) 526-6431 전송) 514-5431
http://bgh.icehs.kr

발행일
2024. 4. 22.

※ 가정통신문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.

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 및 학생 유의사항 안내

학부모님의 댁내에 행복과 평안함이 항상 깃들길 기원합니다.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관련하여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과 학생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 학생들이 안내 사항을 잘 숙지하고,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.

■ 기간: 2024. 4. 30.(화) - 2024. 5. 2.(목)

■ 시간표

날짜	교시	시간	1학년	2학년	3학년
4/30 (화)	1	예비령 09:05 본 령 09:10 - 10:00	영어	영어 I	영어 II
	2	예비령 10:15 본 령 10:20 - 11:10	통합과학	윤리와 사상 / 물리학 I	생활과 윤리 / 미적분
	3	예비령 11:25 본 령 11:30 - 12:20		지구과학 I	
5/1 (수)	1	예비령 09:05 본 령 09:10 - 10:00	수학	수학 I	확률과 통계
	2	예비령 10:15 본 령 10:20 - 11:10	통합사회	세계사 / 생명과학 I	화법과 작문
	3	예비령 11:25 본 령 11:30 - 12:20		일본어 I / 중국어 I	
5/2 (목)	1	예비령 09:05 본 령 09:10 - 10:00	국어	문학	독서
	2	예비령 10:15 본 령 10:20 - 11:10	한국사	정치와 법 / 화학 I	사회·문화
	3	예비령 11:25 본 령 11:30 - 12:20	한문 I	세계지리 / 경제	

■ 이의신청: 등교기간 중 3일간(이의신청 접수 → 교과협의회 실시 →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→ 결과반영 → 결과통보)

1. 정기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

가. 인정점 산출 방법

1) 기준 고사 점수가 있는 경우(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 1회 결시한 경우, 미인정 결시 제외)

$$\text{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한 인정점} = \text{응시(기준)고사 점수} \times \frac{\text{결시고사 평균}}{\text{응시(기준)고사 평균}} \times \text{결시 사유별 인정비율}$$

2)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한 경우(미인정 결시 제외)

$$\text{지필고사 환산점수} = \text{지필고사 만점} \times \frac{\text{해당자의 수행평가 득점}}{\text{수행평가 만점}} \times \frac{\text{지필고사 계열평균의 백분율}}{\text{수행평가 계열평균의 백분율}} \times \text{인정비율}$$

나. 인정 비율 및 결시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

구분 (인정비율)	인정 사유
100%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	◦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시 ◦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(징병 신체검사, 증인 출두) ◦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'학교·시·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교환학습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'의 사유로 인한 결시 ◦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출결상황 관리에서 명시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◦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피해학생의 보호)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◦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,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의 결시 ◦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임시보호기간 등)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 결시 ◦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◦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(본회의,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)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%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◦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시한 경우
80%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	◦ 질병으로 인한 결시(결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,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) ◦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·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◦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(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)에 의한 결시(증빙자료 첨부) ◦ 생리통이 극심해 결시한 경우(학생 인권 보호에 유의)
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	◦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(본회의,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)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%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,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,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는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◦ 법원소년부의 조사·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로 인한 결시 ◦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, 대안교육으로 인한 결시 ◦ 상급학교 진학시험, 특성화고등학교(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) 학생의 입사 시험의 경우 해당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
해당 학년(과정) 학생 성적의 최하점(-1)	◦ 미인정 결시 ◦ 징계로 인한 결시 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(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) 제1항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결시의 경우 ◦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특별준수사항) 제2호에 의한 보호관찰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 ◦ 시·도경찰청 「소년업무규칙」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◦ 학업중단 숙려기간과 지필평가 기간이 중복되어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

2. 학생 유의사항

가. 예비령이 울리기 전에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.

나.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(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 및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(무선 이어폰), 태블릿 PC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결제·통신 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)를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. 가지고 온 경우, 반드시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, 본령이 울리기 전에 시험 감독관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한다.

※ 주의 ※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분됨

- (1) 매 고사시간* 중에 발각이 될 경우: 부정행위자 처분
(2) 부정행위자는 해당 과목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하고, 학생생활규정에 의하여 처벌
*고사시간이란 당일 1교시 본령부터 당일 마지막 시험 종료령까지(쉬는 시간 포함)

다.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답안카드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고사실을 나갈 수 없다. 부득이 시험 진행 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, 복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.

라.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손을 아래로 내린 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고사실에서 조용히 대기한다.

※ 학생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※

- (1) 답안카드의 객관식 마킹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한다.
※ 단, 마킹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, 답안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
- (2) 서술형 답안은 해당번호 답란에 검정색이나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연필, 수정액,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(칠판에 부착 및 강조)
※ 단, 서술형 답안의 수정은 틀린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이어서 답을 작성함
- (3) 답안카드는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.
- (4) 답안카드의 답란에는 답을 표기하는 이외의 다른 형태의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.
- (5) 불완전한 표기(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 안 됨 등) 또는 정답이 1개인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하여 오류 처리되는 경우,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.
※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표기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.

※ 부정행위 유형 ※

- (1) 학번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임의대로 바꾸는 행위
- (2) 다른 학생의 문제지, 답안카드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- (3) 다른 학생과 눈 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- (4) 부정한 휴대물(교과서, 참고서, 쪽지 등)을 보는 행위
- (5) 시험시간 중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(휴대전화, 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 및 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(무선 이어폰), 태블릿 PC, 디지털카메라, MP3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 펜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결제·통신 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,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)를 소지한 경우
- (6) 책상 위에 당해 시험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경우
- (7)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(8) 매 교시 종료 전에 고사실을 무단이탈하는 행위
- (9)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(10)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(11)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2024년 4월 22일

부평여자고등학교장

관인생략